서식 제18호 (제25조 관련) (신설 2015. 6. 1)

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

귀 조합으로부터 아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이행보증을 받는 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, 만일 아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귀 조합이 당사에 대하여 업무거래정지 등의 각종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.

계 약 명	
계 약 금 액	
보 증 채 권 자	
계 약 기 간	

다 음

1. 당사는 공사 착공후 10일이내에 공사공정예정표와 현장대리인(현장소장)·감리자·감독자 등 공사관계자 현황을, 도급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공사 미착공·중지·주요 공법의 변경 등 주채무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,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사본을,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하수급인으로부터 각종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귀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 또는 신고하겠음
2. 귀 조합은 해당 공사의 공정진도율이 부진한 경우 선금사용내역, 하도급대금지급현황, 자재조달 및 사용내역 등을 서면 또는 방문조사하여 지연공기만회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당사가 제출한 지연공기만회계획서에 따라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도금대금 등의 직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응하겠음.
3. 귀 조합이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당사는 주계약공사의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모든 서류, 자료, 해당 공사현장 및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장이외의 장소에 준비하고 있는 물건 등을 정리하여 이를 귀 조합 또는 귀 조합이 지정하는 보증이행업체에 인도물 명세와 함께 지체없이 인도하여 귀 조합의 보증채무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, 당사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이나 자재구입·고용·그 밖의 모든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귀 조합 및 보증이행업체에게 요구하지 않겠음.
4. 귀 조합이 보증시공을 위한 공사현장의 출입과 조사, 공사현장의 보존·관리, 공사현장 또는 그 밖의 소재지에 해당 공사용자재 및 기기의 점유 및 구상권 보전조치 등 그 밖에 필요사항을 요구할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적극 협조하겠음.

20 년 월 일

제출인 주 소

상 호

대표자 (인)

인감대조

자본재공제조합 귀중